

2021년 청렴도 평가 및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

- ✓ 2021년 경기도 공직유관단체 청렴도평가 실시 계획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 운영을 위한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으로 도정 시책 이행

I 개요

- 추진목적 : 경영평가 및 청렴도 평가(부패방지시책) 등에 대비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재단 운영 도모

※ 추진계획 수립 여부 부패방지시책 평가 지표 설정

< 관련 근거 >

- 「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」 제19조(청렴도평가)
- 「경기도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」 실시계획(조사담당관-2287 / '21. 2. 4)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조(공공기관의 책무)

- 기 간 : 2021년 2월 ~ 12월

- 주요내용

- (청렴도 평가) 2021년도 청렴도 평가 기본방향 및 실시 계획(평가지표)
- (반부패 청렴 정책)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과제 설정 및 이행 계획 수립

II 기본방향

- (청렴도 평가)

- 반부패 경영혁신 노력, 경영진 의지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
- 소극 행정, 갑질 등에 대한 평가로 불공정 관행 개선
- 부진기관 선정 시 청렴 컨설팅 실시(신규)

- (반부패 청렴 정책)

- 청탁금지법 규범 강화 및 공정성·투명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
- 취약분야 점검을 통한 자율적 개선 및 신고자 중심 사건 처리, 보호 제도 강화

II

세부 추진계획

청렴도 평가

【평가체계】

○ 평가종류

- (종합청렴도 평가) : II그룹(재단) → 내·외부 청렴도 측정, 부패방지 시책평가, 감점지표
- (반부패 역량진단) : IV그룹 → 부패방지 기반조성, 반부패 교육, 부패영향평가, 도정청렴시책 참여

○ 평가방식 : 기관 특성, 현원 규모 등에 따른 그룹평가 실시

구 분	종합 청렴도 평가(I·II·III그룹)					반부패 역량진단(IV그룹)
선정기준	(I 그룹)(50인 이상), (II 그룹)50인 미만, (III그룹)권익위 청렴도평가					청렴도 평가 신뢰성 확보 어려운 기관
평가영역	외부청렴도 (51%)	내부청렴도 (27%)	부패방지시책 (22%)	부패사건현황 (감점)	신뢰도 저해 행위(감점)	부패방지기반(50%),반부패 교육(30%),부패영향평가(20%)
평가지원<신규>	「청렴멘토링」 추진(우수기관과 부진(희망)기관 간 청렴그룹 구성 및 멘토링을 통한 청렴도 진단 개선)					

【평가 추진계획】

○ 외부 청렴도

- **측정배경** : 도민이 행정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공직자가 금품향응편의수수 등과 같은 **부패 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**를 평가
- **측정분야** : 계약관리(공사, 용역, 물품), 사업관리(고유사업, 위수탁 사업, 위원회), 시설물 임대·관리 운영 분야 <【붙임1】 외부청렴도 평가지표>
- **설문방법** : 전문 면접원, e-mail을 통한 설문조사
※ 조사표본 : 대상기간 중 해당업무를 경험한 업무 상대방(민원인, 계약 상대방 등)

○ 내부 청렴도

- **측정배경** : 소속 직원이 내부고객의 입장에서 **‘해당기관의 내부 업무가 부패행위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정도’**를 설문을 통해 평가
- **측정분야** <【붙임2】 내부 청렴도 평가지표>
 - 청렴문화지수 : 조직문화, 부패방지 제도, 경영진 경영혁신
 - 업무청렴지수 : 인사업무, 예산집행, 업무지시 공정성
- **설문방법** : 전문 면접원, e-mail을 통한 설문조사

○ 부패방지 시책평가

- **측정배경** : 道 공직유관단체의 공정하고 청렴한 기관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 제3조에 따른 **부패방지 책무와 관련 종합평가**
- **평가분야** <[붙임3] 부패방지 시책 평가지표>
 - 반부패 계획 수립, 반부패 기반조성,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
 - 반부패 정책 성과·확산, 부패방지 제도 운영(가·감점)
- **평가방법** : 기관제출 보고서 및 증빙자료

○ 감점지표

<부패사건 발생현황>

- **평가내용** : 최근 1년간 중앙, 道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*부패행위 관련 징계 받은 임·직원에 대하여 산식에 따른 감점 처리
 - *부패행위 : 금품, 공금횡령, 유용, 부정청탁, 문서 위변조, 비밀누설 등(단순 업무과실은 제외)
 - *기관 제체 적발실적은 감점 제외
- **평가방법** : 기관에서 발생한 총 부패금액, 지위, 부패행위자 수, 발생시점, 기관 정원규모를 산식에 적용하여 점수화

<신뢰도 저해행위>

- **평가내용** : 호의적 평가 유도, 측정명부 표본관리 등 평가의 *신뢰도를 저해하는 행위
 - *신뢰도 저해 행위 : 호의적 평가 유도, 측정대상 명부 임의 변경, 현지점검, 제보 등 적발

참고 2020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

- **전년대비 평가점수가 모두 감소하였으나, 종합 청렴도는 전체 기관 대비 0.49점 높은 평가를 받음, 평가 항목 중 외부 청렴도 점수가 전체 기관 대비 가장 저조하며, 주요 평가 저조 항목으로는 업무처리 기준 절차의 공개성, 업무 완수에대한 노력 순으로 나타났음<경영기획 TF-59(21. 1. 14)>**

구 분	전체기관	II 유형기관	재 단		증 감
			2020년	2019년	
종합 청렴도	8.50	8.68	8.99(2등급)	9.24(2등급)	△0.25
외부 청렴도	9.42	9.56	9.33(5등급)	9.49(3등급)	△0.16
내부 청렴도	7.81	7.90	8.72(2등급)	9.09(2등급)	△0.37
부패방지 시책	8.35	7.77	8.55(3등급)	8.87(2등급)	△0.32

【추진목표 및 계획】

○ 제도개선을 통한 부패 예방기능 강화

<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적극 이행>

- 추진목적 : 제도 개선 미이행 건수 'ZERO'를 통해 부패 방지 효과 극대화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

- 추진계획

- 2021년도 차기 이사회를 통한 관련 규정 개정 → **미이행 'ZERO'**

구 분	이행권고	완료	이행중	추진곤란	비 고
건 수	60	49	10	1	기관 특성상 추진곤란 항목 有

- 임직원 행동강령, 부패 및 공익 신고 처리지침 등 관련법령 준수 제·개정(수시)

○ 청렴교육 강화를 통한 청렴의식 제고

<교육강화 제도 마련>

- 추진목적 : 교육 활성화를 통한 인식 개선으로 부패 불공정 행위 근원적 방지

- 추진계획

- 직원 직무교육 중 의무화 교육 지정 및 이수율 근무평정 반영
- 국민권익위원회 교육, 홍보자료(포스터, 카드뉴스 등) 전파
- 기관장 및 전 직원 필수 교육 제도화 마련

○ 관련 지침 마련을 통한 시스템 구축 및 규범 강화

<지침 제정 및 시스템 운영>

- 추진목적 : 부패 방지·척결을 위한 세분화된 기준 마련 및 시스템 운영을 통한 신고 활성화 기여

- 추진계획

- 부패·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운영지침 제정
- 책임관 지정 및 신고 상담 접수창구 운영
- 포상 및 보상제도 운영
- 해당자에 대한 패널티 강화 규정 제·개정

○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

<신고자 보호제도 의무화>

- 추진목적 : 신고자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
 - 추진계획
 - 익명 상담 제보 시스템 도입(추경예산 편성)
 - 신고자 보호·보상제도 운영
 - 신고자 신분, 비밀 보장 의무화 실시
 - 신고자 불이익 조치 등의 금지 및 인사 조치의 우선적 배려 실시
-

○ 부패·공익신고 상담전화 홍보 활성화

<경기 내·외부망 홍보 실시>

- 추진목적 : 부패·공익신고 신고 활성화를 통한 부패 척결 기대
 - 추진계획
 - 재단 홈페이지 및 내부 인트라넷(게시판) 공지
 - 경기 및 행사 시 전광판 홍보
-

Ⅲ 향후계획

- '21. 연중 : 반부패 청렴정책 이행 및 이행사항 점검
- '21. 6. : 청렴도 평가 지표 전직원 공유 및 수시 점검
- '21. 6.~7. : 외·내부 청렴도 평가 명부 제출
- '21. 8.~9. : 외·내부 청렴도 설문조사(전화, 이메일 활용) 실시(경기도)
- '21. 9. : 부패방지 시책 실적 보고서 제출
- '21. 12. : 종합청렴도 분석 보고 및 결과 발표(경기도)